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2월2일(월)

장 소 정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319)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391)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514)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517)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172)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252)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381)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821)
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893)
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00)
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233)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77)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042)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194)

-
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9)
 1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2)
 1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3)
 1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4)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4)
 2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5)
 2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8)
 2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5)
 2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3)
 24.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4)
 25.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4)
 2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6)
 2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4)
 2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3)
 2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8)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2)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3)
 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0)
 3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8)
 3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0)
 35.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9)
-

상정된 안건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319) 5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391)	5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514)	5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517)	5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172)	5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252)	5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381)	5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821)	5
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893)	5
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00)	5
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233)	5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77)	5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042)	5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194)	5
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219)	5
1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2)	5
1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3)	5
1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4)	5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4)	6
2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5)	6
2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8)	6
2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5)	6

2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3)	6
24.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4)	6
25.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4)	6
2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6)	6
2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4)	6
2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3)	6
2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8)	6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2)	6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3)	6
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0)	6
3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8)	6
3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0)	6
35.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9)	6

(10시46분 개의)

○**소위원장 강준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금융위원회 소관 35건의 법률안입니다.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발언 순서를 정하지 않고 손을 들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이를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 제명 중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해서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회의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

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319)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391)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14)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17)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172)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252)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81)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21)
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93)
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00)
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233)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77)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042)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194)
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219)
1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2)
1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3)
1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4)

-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4)
 2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5)
 2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8)
 2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5)
 2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3)
 24.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4)
 25.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4)
 2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466)
 2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64)
 2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33)
 2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608)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2)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3)
 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0)
 3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8)
 3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0)
 35.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9)

(10시48분)

○소위원장 강준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3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15건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최병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대부업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맨 앞부분에 있는 주요 내용 및 심사경과 요약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우선 주요내용 1번 대부업자 등록 시 자기자본 요건 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소위 위원들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주로 시·도지사 등록 개인은 1억, 법

인은 3억으로 하자는 의견과 시·도지사 등록 개인·법인 구분 없이 3억 이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두 가지 의견이 주로 나왔습니다.

이에 금융위의 의견은 시·도지사 등록은 1억 원 이상으로 하되 시행령에서 개인은 1억, 법인은 3억으로 적용할 예정이고 금융위 등록 요건에 대해서는 3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금융위 의견이 왔습니다.

따라서 시·도지사 등록 개인과 법인의 자본요건을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금융위 등록 대상에 대해서 자본요건 3억·5억 원이 있는데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의견입니다.

대부업법에서 1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개인 1억 원, 법인은 3억 원으로 차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개인과 법인의 부담능력 차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법인 등록 수준인 3억 원으로 급격히 상향 시 과도한 부담으로 대부업자가 다수 퇴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간사님.

○**강민국 위원** 사실 대부업법, 특히 불법대부업이 서민들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횡포라든지 여러 가지 반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자기자본 요건이 강화되면 될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개인은 1억, 법인은 3억 이상으로 명시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지금 이것을 시행령으로 하시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업법에서는 1억 원으로 하고 시행령에서 개인 1억 원, 법인 3억 원 이렇게 하는 걸 제안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이것은 법에서 강제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법에서 1억 원, 3억 원이요?

○**소위원장 강준현** 시행령이 아니고. 지금 시행령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그러니까 법에서는 1억 원 이상으로 하고 시행령에서 개인 1억 원, 법인은 3억 원 이렇게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강민국 위원** 법에서 1억 이상이니까 어차피 상향을 놔두는 거 아니야, 오픈시켜 놓는 거잖아.

○**소위원장 강준현** 1억 원 이상 해 놓고.....

○**강민국 위원** 그렇지.

○**李憲昇 위원** 금융위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1억 원, 3억 원 이렇게 규정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천준호 위원님.

○천준호 위원 이 취지는 그런 거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대부업 관련해서 무분별하게 등록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매개로 해서 이것이 불법사금융으로 연결되는 연결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본금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취지였고, 그래서 저는 개인과 법인을 3억 원 이상으로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요.

일단 기존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요건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인데, 특히나 정부안을 보면 법인을 1억 원으로 하고 그것을 또 시행령으로 해서 법인 3억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조금 더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개인과 법인 3억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애초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재섭 위원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천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의견을 좀 표시를 하자면, 일단 저는 금융위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천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분별하게 등록이 되다 보니까 불법사금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자본기준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불법의 종류가 뭔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이 늘어났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방식의 불법인지, 예를 들면 돈을 갚지 못하거나 아니면 돈을 제대로 주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돈의 액수 때문에 생기는 불법인 건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불법인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충분하게 보유하지 못하는 전제 아래서 발생하는 불법이면 기준금을 높이는 게 합리적인 거겠지만 그 이외에 다른 불법의 행태로 불법사금융들이 판을 치고 있다 그러면 기준금을 높이는 것이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불법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금 금융위가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는 이유는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만 보유하고 있다가 설립 시에만 유지하고 바로 그다음에는 보유하지도 않고 있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차입했다가 요청하고 있고, 그런 불법 행위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중심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시행령을 통해서 개인 1억 원 그다음에 법인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정해 주시면 법인에 대해서는 3억 원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판단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적었습 니다마는 미충족하는, 탈락하게 되는 대부업자 수가 개인이나 법인 같은 경우에 60~70%에 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합당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업자 수의 탈락도 중요하지만 이용자 수의 변화입니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으시는지 여부가 여기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경우 같으면 모두 3억 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자체 소

계의 이용자 수 거의 70% 가깝게 66.8%가 대부업체 이용하고 있던 데가 없어지는 효과가 발현됩니다. 그런데 개인 1억 원, 법인 3억 원 정부가 생각하는 안처럼 하게 되면 한 36% 정도만 이용자들이 이용하시던 그중에서 탈락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단기간 내에 이용자분들이 워낙에 본인이 이용하시던 것들을 거의 3분의 2 이상 이용이 없어지는 게 맞을지 아니면 한 3분의 1 정도 하면서 요건을 상향하면서 시행령에서 봄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상향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을지. 그러니까 대부업자 수의 감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혼란 최소화가 확보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김재섭 위원**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좀 쉽게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있는 여러 가지 불법의 행태 중에서 자본금을 높이게 되면 그 불법들이 해결되느냐 이 말입니다.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김재섭 위원** 대부분 다 해결됩니까?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소위원장 강준현** 예.

○**강민국 위원** 천준호 위원님 말씀도 하셨지만 저도 사실 요건이 강화될수록 좋지 않나. 사실 5억하고 10억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니까 이게 지금 개인 1억, 법인 3억 상향을 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느냐 보니까 그러면 현재 대부업체 57.8%, 4300개가 넘는 업체가 불법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렇게 되면 사실 대부업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한 5만 4000명이 감소하고 대출 잔액이 한 1조 5000억이 감소한다더라고요. 맞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개인 1억, 법인 3억 하는 데도 이런 영향이 미치는데 개인과 법인을 3억씩 상향하면 현재 대부업 65.7%, 약 5000개 업체가 불법화된다더라고요. 맞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인 1억, 법인 3억만 하더라도 지금 대부업체 약 4300개가 불법이 되고 국민들 5만 4000명의 이용자가 감소할 수 있다는데 이 부분이 3억까지 돼 버리면 한 5000개가 불법화돼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법에 1억 이상, 그러니까 상향은 오픈을 시켜 놓고 시행령에다가 개인 1억, 법인 3억을 명시하는 게 맞지 않나,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박상혁 위원님.

○**박상혁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1억, 3억은 좀 상당수 컨센서스가 있는데 이것을 법으로 정할 거냐 법에서 1억 이상으로 하고 시행령에서 1억, 3억으로 할 거냐 이 차이도, 다른 의견이 계신 분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게 있는데 금융위에서는 굳이 법으로 정하지 않고 1억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1억, 3억으로 하려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현행법 자체가요 3조의5 등록요건에 보면 자기자본이 100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박상혁 위원 현재 규정이 그렇지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1000만 원을 상향을 어디까지 하느냐인데요. 1억 원으로 상향해 주면 1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돼서 현행 법체계 자체가 시행령에 의해서 그게 규정되도록 돼 있는 체계성이 있다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향후에도 계속 대부업 피해가 극성을 부릴 경우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빨리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권성동 위원님.

○권성동 위원 불법대부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나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대부업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잖아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러면 이게 상향을 하게 되면 이제 돈이 덜 돌 것 아니에요? 돈이 덜 돌고. 그다음에 이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돈을 빌려요, 그러면?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은 현행법……

○권성동 위원 상향이 되면 그 이용자들이 상향된 1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의 대부업체를 이용할 것이다, 그래서 자본이 그쪽으로 몰릴 것이다 그것을 지금 노리는 거지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래 현행 대부업법은 문턱을 대개 1000만 원, 5000만 원으로 낮춰 놓아서 음성 대부업자의 양성화에 포커스를 주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양성화가 되지 않으면서 1000만 원에 난립하니까 자체에서는 관리 감독을 실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향을 해서 실질적으로……

○권성동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상향을 하고, 우리가…… 국회가 항상 문제점이 그거예요.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것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자꾸만 법률로 상향을 하려고 그래요. 왜? 실적 때문에.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행령에 있는 것을 정부가 시행령대로 시행을 안 하고 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할 경우에는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억 원 이상으로 또 3억 원 이상으로 해 놓으면 지금 자기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저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갑시다.

○소위원장 강준현 한 분만 말씀 듣고.

○한창민 위원 그래도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흔쾌하게 답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이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1억이든 3억이든 그게 법인이냐 개인이냐 그쪽의 입장이 아니라 실제로 1억 원 이상으로 했을 경우와 3억 원 이상으로 했을 경우 그 안에서 나오는 피해 사례나 피해의 규모,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통계나 데이터, 향후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없이 자꾸 임의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불법금융 사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없어질 거다 이런 통계가 아니라 지금 불법사금융의 피해가 1억 원, 그러니까 개인 사금융업자한테 나오는 건지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 건지 이것은 좀 보고를 해 주셔야지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 몇 %가 없어지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저희가 생각하기에 1억, 3억으로 만약 규정하게 된다면 65.6%의 지금 대부업체, 현재는 등록대부업체인데 그게 없어지게 되면 없어지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개수, 숫자가 한 삼십몇 %, 현행 숫자에 비해서 그만큼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등록된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미치도록 하겠다는 그리고 불법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총리실 주재의 태스크포스에도 수사기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엄정하게 단속을 해서 불법업체들은 잡아내고 적어도 등록된 대부업체라면 금융위 등록이든 지자체 등록이든 확실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6월 달하고 12월 달에 법에 의해서 관리 내역을 내게 돼 있고 수시로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확보해서 시정명령도 내리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잡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뜻임을 말씀드립니다.

○**한창민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개인 사금융업자를 3억으로 올렸을 경우에는 더 관리 감독이 편하지 않습니까, 명확하고 공식적이고?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그렇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등록대부업체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3억으로 올렸을 때는 70%에 가까운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 열 명 중에 일곱 분은 종래에 이용하시던 그 업체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관리 감독 범위와……

○**한창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소위원장 강준현** 이제 정리해 주세요.

○**한창민 위원**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이것이 규정이 강화되고 그 불법을 이용해 가지고 작은 자본금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 사람들이 최대한 편의성을 가지고 활용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커지는 거고 이것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이용의 편의성은 어려워진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하고 연결돼 있는 것은 서민금융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같이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여전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거기에서 이탈률이 높아지고 불법사금융이든 어쨌든 급해 가지고 피해가 있든 없든 그것을 활용했던 사람들이 활용할 데가 없다, 그러니까 그 정도 피해는 감수하면서 이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 이런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이거든요.

○**소위원장 강준현** 정리해 주세요, 한창민 위원님.

○**한창민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것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이탈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른 방법에 대한 고민은 뭐가 있습니까?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정책서민금융 공급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다음 불사금과 관련돼서 실질적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합법 대부업체를 이용하도록 감독원과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마지막으로 유동수 위원님 말씀 듣고.

○유동수 위원 등록업체 중에서 이 자본금 요건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한 경과 규정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뒤에 부칙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만 2년으로 부과 할……

○유동수 위원 2년?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예, 2년 내에 적합하게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시행령 통과가 2년이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예,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2년은 너무 긴 기간 아닌가요? 물론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긴급성 이런 것 때문에 하면 2년은 조금 길지 않을까. 물론 자기자본 요건을 맞추는 게 쉬운 건 아닐 텐데, 1000만 원에서 10배가 뛰는 거니까 쉽지는 않을 텐데 기간은 조금 단축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기간을 단축을 좀 해야 될……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그건 정부도 의견 드리면서 위원님들과 논의할 문제긴 한데 참고삼아 2006년 일본의 대금업법 개정 시에도 자본금 요건을 대폭 올렸는데 그때는 4년을 주었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그것은 부칙 할 때 논의하시면 되거든요.

○강민국 위원 박상혁 위원님 말씀 맞아요.

○소위원장 강준현 부칙 할 때 논의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관련해서는 기존 정부안대로, 여야 위원님들끼리 약간의 이견은 좀 있는데 1억 이상으로 하고 시행령에서 개인 1억, 법인 3억으로 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금융위 등록대상 자본요건도 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李憲昇 위원 3억으로 하기로 했잖아.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건 3억 이상으로……

○소위원장 강준현 금융위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니까 지금 시·도지사 등록의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는데요.

○소위원장 강준현 금융위에서 하는 것도 3억.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금융위는 3억 이상으로 대령에 위임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예.

맞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지금 금융위는 법인만 하기 때문에 3억 이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 2페이지 보시면 주요내용 2번하고 3번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2번은 전업 대부중개업자 등록 시 자기자본 요건을 도입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 의견은 유사 성격의 금융상품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자기자본 요건을 부과하지 않는 점으로 고려해서 일반적인 전업 대부중개업자 자본요건 도입보다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한정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주요내용 3번을 보시면 온라인 대부중개업 금융위 등록 의무화 및 등록 요건 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강민국·박성준 의원안의 내용을, 온라인 대부업 정의는 두 안의 내용을 통합해서 수정의견으로 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업자 자본요건 하한을 법률에서 정해서 대령에 위임하도록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금융위는 자본요건의 하한을 1억 원으로 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의견입니다.

금소법상 대출중개업자도 자본금 요건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전업 오프라인 대부중개업자는 현행 유지, 자기자본 요건 제외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대부 피해가 대부분의 피해임을 고려해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한해서 금융위 등록 의무 및 자본금 요건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준호 위원님.

○천준호 위원 이번 저희가 대부업법 개정안 논의의 핵심 취지가 그동안에 대부업체가 좀 무분별하게 난립했고 그래서 일정하게 설립 요건을 좀 강화하자라는 취지에서 앞에 자기자본 요건도 좀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상당수의 과거에 불법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대부업 등록을 해 놓고 그 업체를 통해서 예를 들면 대부업 대출 문의를 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사실상 불법사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왔는데 그 요건을 강화하게 되면 상당수의 분들이 중개업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위의 안은 온라인 중개업에 대해서만 요건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프라인 중개업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등록 요건을 둬야만 과거에 대부업 등록 요건을 저희가 1000만 원으로 해서 만들어 놓았을 때 무분별하게 그것이 악용됐던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온라인과 같은 요건으로 자본요건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준호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중개업자는 전업 대부중개업자가 있고 그다음에 대부업과 겸영하고 있는 겸영 대부중개업자가 있습니다.

겸영은 대부업과 같이 합동으로 영위하기 때문에 이미 자본금 요건 3억 원이 금융위 등록 같은 경우에는 부과돼 있고 자체도 향후에는 3억 원이 부과돼서 2000여 개의 겸영 대부중개업자는 이미 자본금 요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한 1000개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자본금 요건을 신설할 것인지, 현재는 없어서 문제인데. 일단은 뒤에서 다시 위원님들 법안소위에서 논의하시겠습니다마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같은 경우는 사기범죄 수준으로 현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안에도 징역 5년 벌금 2억으로 상향해야 한다가, 향후 오늘 논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미등록 대부중개업 같은 경우는 사기범죄 수준 징역 10년까지도 저희가 이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판매나 위원님 제기하신 목적 외 사용 시에는 동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징역 5년과 벌금 2억을 이미 규정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1000여 개 되는 전업 대부중개업자까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인 온라인 사이트는 당연히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과 궤를 같이하고요.

전업 대부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대부업체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1000개까지도 굳이 자본금 요건을 부과를 함으로써 벌칙이 대폭 강화된 상태에서 그분들이, 이용자분들이 중개업체가 전혀 없어서 직접 대부업체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 상태로 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콘센(concern)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오프라인 중개업자 자기자본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지금 무리가 있으시다?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천준호 위원님.

○천준호 위원 오프라인 중개대부업자를 지금처럼 아무 규제 없이 설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기존에 한 1000만 원 내고 대부업체를 만들었다가 자본요건을 강화하면서 거기에 옮겨 가지 못하는 업체들이 그리로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지금의 불법사금융의 영업 방식을 놓고 보면 바깥으로 광고를 하거나 홍보를 할 수 있는 업체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대부업체가 아니라 중개업체로 한다고 하더라도 광고나 홍보나 이것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불법 사금융 영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 업체가, 이 상태로 만약에 정부의 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오프라인 대부업중개업자들을 중심으로 숫자가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불법사금융과 급전 수요가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연결고리로, 다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정부가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을 두셔야 한다. 안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취한 대부업체 자본요건 강

화한 것이 무력화될 것이다 이런 걱정이 상당히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그러면 천준호 위원님 오프라인도 동일하게 1억으로?

○**천준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천준호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혹시……

○**李憲昇 위원** 정부 측.

○**소위원장 강준현** 아니, 정부 측 의견 말고 혹시 위원님들……

천준호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강훈식 위원** 요즘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해서 부르는 게 약간 좀 재미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온·오프라인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풍선효과로 한쪽으로만 더 치우쳐질 가능성이 당연히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 측도 이 정책의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온라인은 하고 오프라인은 안 한다 이런 관점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을 좀 해 보시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 온라인이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에서는 익명으로 누가 사거나 연결을 쉽게 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천준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일리가 전혀 없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은 올릴 수…… 1억은 사실 좀 많다는 느낌이 들고요. 1억으로 하게 되면 84%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5000만 원만 해도 82% 정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1억이나 5000까지 올리기는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은 들고요. 하지만 약간 이동하는 것을 고려해서, 이동해서 이쪽으로 올 가능성은 고려해서 한 이삼천 정도 두는 것은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00으로 하면 저희가 자료로 봐서는 82% 정도 기존 업체가 없어지고요. 아까 1억으로 하면 팔십사점몇 프로 없어집니다. 그것은 약간 많은 숫자로 보이고요.

○**박상혁 위원** 차등화하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두되?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지금 온라인 쪽이 훨씬 더 문제가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프라인은 아직 발견된 문제가 아주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천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쪽에서 넘어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1000만 원보다 조금 더 높이는 정도가 어떨지 그 정도 생각입니다.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위원님, 혹시 가능하시다면 법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시행령 1000만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 맞춰 가지고 운영하는 데 최대한 전업 대부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준호 위원** 제가 앞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사실은 법에서 금액을 정하는 사안이면 법으로 다 금액을 정해야지 그걸 자꾸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예 금액을 다 시행령으로 위임할 거면 다 위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앞엣것도 사실은 제가 그냥 별말씀을 안 드렸는데 법인은 왜 시행령에서 따로 정해야 됩니까? 그런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금융위원회에서도 이미 다 법인 3억으로 하고 계신데. 저는 하여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명확하게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도 대출, 특정 업체를 말하면 안 되겠지만 대부업중개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업체만 광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중개업체들도 광고를 합니다. 사실상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등록된 대부업체들이 그 사이트에 전화를 하면 거기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오더만 따 가지고 그걸 불법사채업자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영업하는 건데 똑같이 합니다, 사실은 지금도 구분 없이.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열어 주게 되면 다 그리로 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매개로 해서 영업을 하면 우리가 논의했던 게 다 사실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금액이 올라가면 당연히 업체가 줄겠고, 하지만 건실하게 영업을 하시고 이런 데들은 그 요건을 갖춰 가지고 등록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등록업체를 줄여서 내실 있게 관리하자고 하는 게 이번 대부업법 개정의 전반적인 취지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많이 줄어들어서 대부업과 관련된 연결이 어려울까 봐 걱정하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으로 이미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사람들이 대부와 계약이 연결이 안 될 걱정을 하실 건 아니라고 보고 이것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여지를 그대로 남겨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념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요건을 저는 위에 대부업자 거기서 1억으로 했던 것과 같은 문제의식으로 여기서도 1억으로 하고 오프라인도 1억으로 한결같이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위원장 강준현** 제가 정리 좀 해 드릴게요, 부위원장님.

대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5000만 원이 없을까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없으신 분도 있지 않나 생각은 들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본인 자기자본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조승래 위원** 좀 시간을 주면 되잖아요, 시간을. 법 정해 주고……

○**소위원장 강준현** 부칙에서 시간을 주기로 돼 있으니까.

○**조승래 위원** 시간을 주면 되지, 뭐.

○**소위원장 강준현** 그러면 제 생각에…… 아까 3000만 원 말씀하셨는데 5000만 원으로 하더라도 81% 준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오프에서 대부업 하시는 분들이 5000만 원 없을까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이게 대부업이 아니라 대부중개업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중개업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중개는 사실 본인 돈이 필요 없지요.

○**소위원장 강준현** 대개 돈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자본금도 없을까요? 나는 다 있을 거라고 봐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참고삼아 하나만 말씀드리면 금소법상의 대출모집인도 그렇고요 이 중개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 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李憲昇 위원** 지금 그러면 대부중개업자 수가 온라인·오프라인 해 가지고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겸영으로 하고 있는 중개업자가 2000개, 대부업도 하면서 중개업도 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전업으로 대부중개업만 하고 있는 데가 1000개, 온라인은 한 20여 개……

○**李憲昇 위원** 온라인 20여 개밖에 안 돼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그런데 거의 온라인으로 요새 많이 갑니다. 옛날처럼 오프라인으로 다니시지를 않으니까.

○**소위원장 강준현** 이렇게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거는 저도 좀 반대고요. 아까 3000만 원까지 말씀하셨으니까 3000이냐 5000이냐 이 결정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창민 위원** 위원장님, 천준호 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5000과 1억 사이에 81%하고 팔십몇 프로 이 정도 수준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자꾸 이걸 온·오프를 이야기하면서 구분하는 것보다는 1억, 1억으로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인데 자꾸 대부업자가 줄어드는 비율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알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1억 원일 때 84%고 5000만 원일 때 82%라는 얘기는 실제로 아주 영세한 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본이 거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어떻게 끊어도 많이 퇴출은 되는데 지금 1억까지 말씀하시는 거는 상당히, 실제로 그렇게 1억까지 모을 사람이 많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법령으로 하시려면 한 3000만 원 정도로 낮춰 주면 좀 낮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3000만 원 하더라도 아마 대부분 퇴출은 될 텐데, 현재 돈이 없는 경우에. 하지만 3000만 원 마련하기는 상대적으로 좀 쉬워 보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가면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어찌 됐든 이게 크게 보면 민생 법안이고 우리 서민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만드는 법안이니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법안 자체가 아주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제재 조치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천준호 위원님, 3000만 원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우선 시작은……

○**강민국 위원** 법에 규정하고.

○**소위원장 강준현** 법에 규정하고.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3000만 원 이상 법에다 하고 그다음에 시행령에 저희가 더 올릴 수 있게 되면 올릴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30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또 시행령으로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소위원장 강준현** 오케이.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천준호 위원** 온라인은 어떻게 되나요?

○**소위원장 강준현** 온라인은 1억.

○**천준호 위원** 1억으로 법으로 규정하고?

○**소위원장 강준현** 법으로 규정하고.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면 법에다가 오프라인 3000만 원, 온라인은 1억 원 이상, 위임 여부에 대해서……

○**소위원장 강준현** 법에 온라인은 1억 이상 그다음에 오프라인은 3000만 원 이상.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3000만 원 이상일 때 대령으로 위임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 3페이지, 주요내용 1번 보시면 등록 이후 자기자본요건 미충족 시 등록 취소 사유에 대한 부분이고, 강민국 의원안은 등록 취소 가능사유로 규정하고 일시적으로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로 시정명령 이행 시에는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안은 필요적 등록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위 위원들 의견을 보시면 정부 의견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의견 그다음에 자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행태가 반복될 개연성이 있다는 의견 그다음에 법인의 결산이 3월 말에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구체적인 자본요건 충족 여부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금융위는 강민국 의원안을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의견입니다.

자본금 요건 미충족 시에 등록 취소 가능사유에 포함하되 일시적으로 미충족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을 이행 시에 등록 취소에서 제외함이 타당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 미충족 시 시정명령하고 두 번째 미충족 시 등록 취소하는 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법인 자본요건을 자기자본에서 순자산액으로 바꿀 시에 회계 처리 측면에서 불필요한 실무적 부담 및 혼선이 예상되어 자기자본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이거는 별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6개월마다 금융위나 시·도지사에 업무보고를 하게 돼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사실 원샷 원킬(one shot one kill)로 하는 거는 너무 과하다. 일단 기한을 줘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는 또 제외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이견이 없으시면 강민국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주요내용 2번, 법인 자본요건을 자기자본에서 순자산액으로 변경 여부에 대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은 법인은 자기자본, 개인은 순자산액으로……

○**李憲昇 위원** 몇 페이지예요?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3페이지 하단입니다.

그다음에 천준호·한정애 의원안은 법인·개인 다 순자산액으로 변경하자는 개정안입니다.

금융위 의견을 보면 법인에 대해 순자산액을 사용할 경우 불필요한 실무적 부담, 혼선이 나올 우려가 있어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검토의견은 자기자본과 순자산액은 회계적으로 개념 차이가 거의 없고 타 금융권도 대부분 자기자본을 재무요건으로 사용 중이어서 변경 실익이 크지 않다는 금융위 의견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의견입니다.

법인 자본요건을 자기자본에서 순자산액으로 바꿀 시에 회계 처리 측면에서 불필요한 실무적 부담 및 혼선이 예상되어 자기자본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동수 위원** 개인은 어떻게 합니까? 순자산액으로?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현행 그대로입니다.

○ **소위원장 강준현**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 4페이지, 주요내용 1번 대부업 대표자 경력요건 신설 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천준호 의원안에서는 대표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 임직원으로서 1년 이상 경력 보유 요건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소위 위원님 의견을 보시면 경력요건 신설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 특정 직군 경력만 요구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서 경력요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그다음에 여신전문금융기관 전문직렬 감독기관의 전문성을 모두 포함해서 경력요건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이야기가 됐었고요.

금융위의 의견은 여신금융기관,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경력, 기타 금융 관련 유관업종 경력 등도 폭넓게 인정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기타 이에 준하는 경력도 대통령령에 위임토록 조문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의견입니다.

금융업권의 대표자에게 결격요건이 아닌 경력요건을 요구하는 사례는 없어서 대부업권에 과도한 요구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논의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 **유동수 위원** 이 조항은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자격요건을 명문화하는 게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예를 들어 금융 관련 업에서

일정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격요건에 그걸 넣어서 그 요건을 가진 사람은 못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강준현** 예, 말씀하십시오.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현행법에 이미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격요건이 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벌금 이상을 받고 금고 이상의 형과 등등등 처리되어 있어서 그 내용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현재 내용을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유지를 한다면 조금 강화하는 방안은 있을까요, 국장님? 결격요건을 유지하되 내용을 더 강화해서 조금 넓힌다거나……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전반적으로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동수 위원** 대부업 관련해서 어떤 시정명령을 위반한 부분이라든지 대부업 관련해서 조금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넣어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한창민입니다.

짧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의 논의보다 훨씬 더 후퇴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논의가 일정 부분 경력 사항에 대해서 한계를 두지 말고 좀 더 금융업권을 넓혀 가지고 그것을 보완하면서 하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양성화와 전문성 강화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네거티브로 한다고 하면 그 취지가 조금은 후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금융위에서도 우려했듯이 관련된 것에 대해서 경력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 가지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 어떤가 의견을 드립니다.

○**박상혁 위원** 제가 지난번에 경력요건 도입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다른 동료위원님들하고 토의를 해 보면서 이게 현실 적응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무슨 자격시험도 아닌데 이런 고민들, 현실적인 충분한…… 그러니까 뒤에 두 번째에 있는 겸직금지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되, 이렇게 쪼개기 하는 것은 유지하되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조금 현재의 결격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이해가 충분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수정의견을 제가 제출하려고 합니다.

○**李憲昇 위원** 천준호 의원님께서 이 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입법 발의 취지가 대부업 대표자의 경력요건을, 전문가를 대표로 임용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하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난번 소위 할 때 꼭 대부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여신금융기관이라든지 변호사나 세무사·회계사 이런 전문직, 기타 등등 이런 분들이 배제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포함시키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상혁 위원님 말씀처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제가 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박상혁 위원** 방식의 차이요?

○**李憲昇 위원** 예.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거 외에는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혁 위원** 예, 그런데 그거를 지금보다 조금 더 넓혀서 강화하는 거지요, 현재보다. 현재도 그런 조건은 있는데 좀 더 강화하자라는 방식인 거고. 예를 들면 이런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것과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방식, 이 2개 차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의 방식에서 조금 더 강화하되 현재를 유지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 대신 뒤에 있는 겸직 의무는 개정안대로 이렇게 해서 쪼개기 하는 것은 못하도록 하는 방식……

○**李憲昇 위원** 그거는 겸직에서 의논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 조항은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박상혁 위원** 예, 수정 제안을 하는 거지요. 수정 제안을 해서 조금 논의가 끝나기 전에 금융위에서 현재의 결격요건보다 강화된…… 현재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다, 결격요건에?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그 부분 질문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대표이사의 결격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이 끝나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큰 한 덩어리고요. 두 번째는 별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도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폐업을 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폐업을 한 날로부터는 뒤에 3년으로 저희가 늘릴 생각이니까 그것까지 감안해 주시고요.

크게 그 세 가지인데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애니(any) 별금형, 지금 유통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애니 별금형, 애니 금고 이상의 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부업법을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하는 취지에도 공감하는데, 위반한 경우에 있어서도, 현행 결격요건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미 되어 있는 데다가 그래서 저희는 사실 현행 규정으로도 어느 정도 달성될 수가 있지 않느냐. 더 강화하는 것은 더 찾아보겠습니다마는 그 대신에 인위적으로 사실 ‘대부업 대표이사를 1년 이상 지냈을 것’ 이런 식의 규정은 그 자체를, 그런 분이 오는 것을 반대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서민들이 합법적으로 대부업을 이용하시는 분들 자체가, 대부업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힘들어집니다.

실질적으로 대부 공급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지금까지, 불사금을 엄격하게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때 급전시장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대부업 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서로 모셔오기 경쟁이 일어나면 서민층이 어려워지는 부분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결격요건 쪽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李憲昇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정리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강준현** 지금 대부업법 보면 제4조(임원 등의 자격)에 네거티브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것을 준하자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유동수 위원** 예.

○**소위원장 강준현**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수정해서……

○**박상혁 위원** 그런데 내용은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유동수 위원**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라 그러지요.

○**소위원장 강준현** 부위원장님.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임원 등의 자격 관련해서는 내용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면 강화시키는 내용을 금융위랑 같이 작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님한테.

○**소위원장 강준현** 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다음 사안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대부업 대표자 등 겸직금지 의무 신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강민국 의원안에서는 대부업체 대표자, 임직원, 업무총괄사용인의 겸직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소위 위원들 의견들을 보시면 겸직금지 의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겸직금지 도입의 타당성이나 겸직금지 대상의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소위 쪼개기 등록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바람직하나 헌법상 비례원칙 등을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금융위 의견은 쪼개기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표자, 업무총괄사용인에 대한 겸직금지 의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나 다만 임직원에 대한 겸직금지 부분은 삭제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의견입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사례 등을 고려하여 대부업 대표자의 타 대부업 겸직금지 의무 부과가 타당합니다. 다만 쪼개기 등록 방지 차원이므로 타 대부업 겸직금지의 대상을 대부업 대표자, 업무총괄사용인에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 자진 폐업 후 재등록 제한기간 연장은 소위 위원들 의견이 없으므로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동의합니다.

○**李憲昇 위원**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으로 6페이지입니다.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금전 대부계약 효

력 제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강민국·김선교·김현정·박상혁 의원안에서는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 효력을 상사법정이자율인 6%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안, 민병덕 의원안은 전체 이자약정에 대해서는 무효로 해야 된다는 안, 다음으로 박성준·천준호 의원안에서는 금전소비대차 약정 전부를 무효시켜야 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원본·이자 반환 청구는 불가하도록 규정해야 된다는 개정안에 대해서 소위 위원들 의견은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우 원본과 이자 자체를 무효화시키자는 의견,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원본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것을 전제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이자를 무효로 하는 것이 체계상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융위 의견은 원금 또는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것은 민·상법 체계상 과잉입법이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다수 의원안과 같이 6%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입법정책적으로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약정에 한해 무효로 하는 방안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검토의견은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이득을 제한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며 금전대부계약 또는 이자약정을 무효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 재량에 해당하나 대부계약 전부 무효는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의견입니다.

상사법정이자율 제한이 법리상 타당합니다. 하지만 입법정책적으로 불법사금융 이자계약을 무효화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불사금융업자의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무효화하는 것은 향후 법사위 등 논의 시 과잉입법으로 지적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천준호 위원님.

○**천준호 위원** 다음에 논의할 내용하고 사실은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하는 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정부 측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국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된 것이 과거 불법사금융과 관련된 논의에서 큰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반사회적 계약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가 사실은 쟁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 상해, 폭행·협박 여기까지를 반사회적인 행위로 볼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고리의 이자를 전제로 한 계약 행위 자체를 반사회적 행위로 볼 것이냐. 저는 이 후자까지를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하자면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닌 미등록 대부업체의 계약 행위 이 것도 사실은 반사회적 행위로 보고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범위를 넓게 가져가 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사금융업체에 의한 계약 행위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하는 이런 논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강민국 위원** 저도 한 말씀만.

○**소위원장 강준현** 존경하는 강민국 간사님.

○**강민국 위원** 저도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반사회적, 이미 열거한 성착취 추심이라든지 인신매매, 신체 상해, 폭행·협박 이것은 어차피 여야 그리고 정부가 다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천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하는 것이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면 출자의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5조에 보면 연이율 109.5%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은 전체 무효로 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일본 법률에 규정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지금 보통 고통받는 서민들이 공통적으로 보면 수백, 수천 %의 고금리, 초고금리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내용 자체에 연이자로 환산한 이자율이 원금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도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금융위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말씀하셨듯이 이자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반사회적 행위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100% 이상 이자율이 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원금보다도 더 많은 이자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생각을 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도 비슷한 예가 있는데 일본은 하루에 0.3%로 돼 있습니다. 하루에 0.3%인데 연 109.5% 이상 소비대차계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100% 이상 정도로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정의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민국 위원** 위원장님, 천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은 생각이고 정부 측도 동의를 하니까 이것을 추가를 해서 넣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에 법정이자의 5배, 그러니까 100%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100% 맞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예, 100%.

천준호 위원님.

○**천준호 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박상혁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이견은 없고요. 조금 전에 얘기하던 불법사금융업자 4페이지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는 6% 상사법정이자율 이런 개정안을 내기도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여러 가지 논의를 보면 천준호 의원님 안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는 데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천준호 위원님.

○**천준호 위원**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이자, 이와 관련해서는 현행은 20%까지는 인정을 하고 그 이상의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가 있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얼마만큼 초과해야 그것이 반사회적 계약 행위로 볼 것이냐가 저는 쟁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께서는 일본 사례를 들어서 5배를 이야기하셔서, 현재 20%니까 5배면 연 100% 이자율에 대해서는 반사회적 계약이라고 보고 그런 계약과 관련된 것은 등록된 대부업체라 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다 무효화하자라고 말씀을 주셔서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 주셔 가지고 감사하고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자가 반사회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제시한 안 중에는 법정 상한율을 초과하는 이자와 관련한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다 무효화하자는 문제의식의 제안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금융위가 그동안에 검토의견으로 제시해 주셨던 것은 실제로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대부업체의 경우도 20% 법정 상한 이자를 지키기 위해서 영업을 하지만 불가피하게 그것이 초과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원금과 이자를 다 무효화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그게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주셨던 바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 수준의 반사회적 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의 기준을 일본에 꼭 맞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법정 상한의 두 배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연 40% 이자겠지요. 연 40% 이상의 이자에 대한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무효로 해서 원금·이자를 무효화하는 안으로 할 것을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존경하는 이현승 위원님.

○**李憲昇 위원** 미등록한 불사금 이자 제한에 대해서 보니까 의원님들이 많이 발의를 해 주셨는데 상사법정이율인 6%로 하자는 의원이 박상혁·김현정·김선교·강민국 의원안이고, 이자에 대해서만 무효로 하자 민병덕 의원안이고,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다 무효로 하자는 게 천준호 의원님, 박성준 의원님 안인데 이 법 중에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라는 조항을 넣은 것은 강민국 의원안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항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까 법정이자 최고금리가 원금의 배 이상일 경우라고 이렇게 제안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준호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법적으로 20% 이상 못 받게 돼 있으면 그것을 지켜야 되고, 두 배 이상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너무 과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무리한 계약이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무효화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미등록한 불법사금융하고 약력사금융업자하고는 분명하게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단지 미등록이나 이래 가지고 불법사금융업자로 되는 분들은 상사법정이율만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천준호 의원님 안에 동의를 합니다.

○**박상혁 위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불사금과 등록과 이것을 다……

○**강민국 위원** 아니, 뒤엣것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두 배로 해 버리면,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연이자로 환산한 이자율이 원금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게 좀 합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천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40%를 이야기하는 건가?

○**천준호 위원** 결과적으로 40%가 되는 것이지요.

○**강민국 위원** 40%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범위를 너무 한정되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김재섭 위원**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경우에는 이자와 원금 모두를 무효화시키는 거면 사실은 굉장히 강한 처벌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반사회적이라는 개념을 많이 확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자율 두 배 정도를 가지고 이를 예를 들면 성착취 추심이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랑 동등하게 취급하는 거는 비례의 원칙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40%는 충분히 과잉된 이자로서 우리가 얼마든지 20% 낮춰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것을 40%의 이자를 받았다고 해서 인신매매, 신체 상해, 폭행·협박이랑 동일하게 처벌을 한다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李憲昇 위원** 위원장님, 금융위원회 의견 한번 들어 봅시다.

○**소위원장 강준현** 예.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강민국 위원님과 천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연이자로 환산한 이자율이 100%인 경우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섭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폭행·협박, 성착취 추심을 통한 것과 동등으로 법사위에 가더라도, 법사위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반사회성을 인정하기가, 40% 최고이자 위반을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고 비례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실질적으로 캐피털사나 이런 등록 대부업, 법정 대부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에서 40%를 넘는 케이스가 왕왕 발생합니다.

불법사금융을 확실하게 척결하고 그다음에 최고금리 위반을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꼭 일본의 법리에 따라서가 아니라 100%, 원본을 초과하는 이자율이 반사회성을 갖는다는 데는 타당성이 있고, 감독원하고 저희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마는 실제 운영상으로도 100% 정도 수준일 때, 일본은 109.5%입니다마는 우리는 그보다 더 낮춰서 100%가 합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정부안으로 대부업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때도 내놨었습니다마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도 오랜 논의를 거쳤었는데 원칙적으로는 불사금업자라 하더라도, 불법업자라 하더라도 상사법정이율인 6%는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게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강력한 논리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복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금전대차거래라는 사실행위가 이미 대부자하고 피대부자 사이에 존재하는데 그게 불사금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것은 부당이득 반환 금지의 원칙에도 반하고 민·상

법의 과잉입법이라는 견해를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굉장히 강력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애시당초 6% 이자, 사실상 6% 이자라 해도 불사금 피해인 입장에서는 50만 원, 100만 원 빌려서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빨리 법률 관계와 피해에서 종식되고 정상 생활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분들인데, 원본까지 무효를 해 가지고 혹은 6%냐 0%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이분은 평온한 정상 생활로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인데 이거를 여기서 원본을 무효로 하냐 이자를 무효로 하냐 법률을 깨뜨리냐, 법리 6%를 보장해 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연이자 관련돼서 실질 실행상으로 캐피털사나 다른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회사들도 40% 위반 같은 경우는 왕왕 발생하고 80% 위반도 자주는 아닙니다마는 발생……

○**李憲昇 위원** 그걸 못 하게 막아야지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제재하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걸 못 하게 막는 게 금융위원회의 역할인데 40%, 80% 왕왕 발생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그런 취지는 아니고 반사회성……

○**李憲昇 위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왜 우리가 법정 최고이자를 낮춰 가지고 20%까지 했습니까? 그거를 잘 깨달으시고.

한 해 이자가 월금의 절반 이상 나간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50% 이상 이자. 그거랑 100%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그러면 80%는 괜찮고 100%는 안 되고 99%는 되고 100%는 안 되고, 너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요.

사실은 대부업법은 대부한 이자를 수취하는 데 있어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할인금, 사례금, 연체금, 모든 명목을 포함해서 그 이자율을 20%가 됐든 40%가 됐든 100%가 됐든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거래 관행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금리 위반 중에 반사회성을 질 정도로 강력한 고의적인 최고금리 위반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40%가 합당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뜻은 아니고요. 이 거래 관계가 사회 상규에 맞춰서 합당하게 이루어지기는 해야 되겠기에 저희도 고민 끝에 또 법무부의 의견도 있고…… 저희가 불사금업자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자는 취지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국장님, 정리해 주시고.

○**천준호 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도 40% 이상의 대부계약이 발생한다고……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통상은 아니고요.

○**천준호 위원** 종종 있다, 왕왕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가 그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까?

○**금융위원회가계금융과장 전수한**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입니다.

실무적으로 캐피털 회사 같은 경우에는 PF 대출 같은 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PF 대출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수수료라든가 선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금융위 제재 사항을 보면 40% 이상이나 20% 이상 최고금리를 위반해서 제재를 받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천준호 위원 그거는 사업 자체가 복잡하다 보니까 원가나 이자 계산 이런 게 중충적이고 복합적이어 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이런 취지의, 일종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발생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는 의도한 경우, 목적의식적으로 고리의 이자를 받겠다고 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40%도 왕왕 그런 게 발생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어차피 지금 20% 이상 법정이자를 상한해서 대부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영업을 했다고 하면 처벌 조항이나 이런 게, 처벌 대상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원금·이자가 다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현재 상황에서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조항은 이미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어느 정도 수준을 반사회적 계약으로 보고 그것을 원금·이자를 무효화하는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가 쟁점인데 5배 정도는 일본 사례가 있고 그리고 금융위에서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걱정이 좀 돼서 그렇습니다. 20%하고 100% 사이가 하나의 어떤 구간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구간을 좁히자라는 취지로, 물론 20% 넘으면 처벌 대상도 되고 단속도 되긴 하겠지만 60% 정도, 그러면 원래 법정 최고이자의 2배가 아니라 3배 정도를 초과한 계약에 대해서 반사회적 계약으로 저희가 규정을 하고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안으로 검토하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수정의견을 드려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관련해서 저희가 반사회적인 이자율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오늘 말고 저희가 좀 검토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어떨지.

○소위원장 강준현 부위원장님, 이렇게 하실게요.

아까 네거티브 시스템 관련해서 요건 강화하는 것 목록 해 오신다고 그랬지요? 그거하고, 지금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께서 3배를 말씀하셨어요. 관련해서 검토를 해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따 속개할 때 그 검토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소위원장 강준현 여야 간사 간 합의 봤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우선은 본회의 산회 직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변경되거나 자세한 일정이 나오게 되면 위원장이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15인)

강명구 강민국 강준현 강훈식 권성동 김병기 김상훈 김재섭 김현정 박상혁

유동수 이현승 조승래 천준호 한창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

기획조정관 유영준

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금융정책국장 신진창

금융산업국장 안창국

자본시장국장 박민우

디지털금융정책관 전요섭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김기한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이성주

한국산업은행

전무이사 김복규